중국 통관절차

1.수입 신고 전 💙 2.수입 신고 🥏 3.물품 검사 🔰 4.관세 납부 및 통관 완료

1. 수입신고 전

1-1 통관고유번호 발급(CR Number: Customs Registration)

개요	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 필수적으로 중국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수입하거나 통관고유번호를 발급 받은 에이전트와 계약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함 (단, 상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발급 면제)
발급절차	CR Number 발급 신청
벌칙	-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, 미국 통관항에서 양하금지 조치 - 최초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 5,000달러,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 10,000달러 부과

1-2. 적하목록 (Manifest) 제출

제출 기한	│-해상운송: 선적 24시간 전(컨테이너선), 목적항 도착 24시간 전(기타선박 │
	│-항공운송: 항공기이륙 전(4시간이하 단거리항공), 목적항 도착 4시간 │
	전(장거리항공)
	(6기다86)
	-육상운송: 목적역 도착2시간 전(열차), 목적지 도착 1시간 전(차량
	18 23 11 1 2 12/12 2(24), 11/14 2 11/12 2(4)
미제출 시 제재	│-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절차의 수행을 일시 │
	중지
	5A
	-세관은 적하목록이 신고되지 않은 화물의 반송 명령 가능
	세르트 그의ㅋ그의 단프되지 않는 최근의 분이 이어 가이

2. 수입신고

2-1 수입신고서의 제출

개요	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적하목록 제출 후,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관할세관에 제출하여야 함
제출방법	• EDI를 통한 신고 - 수입화물의 수하인이나 위탁을 받을 통관기업이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서 전자자료를 전송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
	- EDI신고는 특정 사이트를 통한 신고가 아닌 통관기업에 관세청과 링크되어 있는 S/W를 설치하여 해당 S/W를 통한 수입신고 진행
	• EDI를 통하지 아니한 신고 - 수입화물 수하인이나 위탁 통관기업이 수입신고서 3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직접 제출
	※ 수입통관시 제출해야 하는 관련 증빙서류 - 서명된 상업송장 (Signed Invoice)
	- 포장명세서 (Packing list)
	-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(Bill of Lading or Delivery Order/Airway Bill)
	- 운송보험서류
	- 소포명세서 (우편운송의 경우)
	- 화물수취증 (육상운송의 경우)
	- 일부 해당물품의 경우 관련 수입 라이센스 (동식물 수입허가증, 약품 수입허가증 등)

	- 기타 세관이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
신고의무기간 및 기간 경과 수입신고	•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의 입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입신고 해야 함
	• 신고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신고 시 과세가격의 0.5% 신고 연체료 납부

2-2. 수입신고서의 심사

심사내용	• 전자적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되면 통관지 관할세관의 심단처(審單處)에서 수입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다음사항을 심사함
	- 서류제출 구비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무결성 여부
	- 수입 신고된 물품이 수입금지품 또는 제한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
	- 운송인이 제출한 적하목록과 수입 신고인이 제출한 통관서류상의 상세 품목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
	- 신고된 가격이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 등

2-3. 수입신고서의 처리

처리결과	- 관할세관은 제출된 전자적 수입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의 심사 후 수입자 또는 통관기업에게 반출허가 또는 서류제출심사를 통보
	- 서류제출심사를 통보받은 수입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요구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세관에 서면제출
	- 수입신고서를 심사 후 반출허가를 통지하는 화물은 수입신고인의 신용이 높거나 수입화물에 대해 세금을 징수 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 해당 됨

2-4. 담보의 제공

개요	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폐, 어음, 보증서 등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
담보제공 사유	• 다음의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음 -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이 불명확하여 수입통관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인이 화물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
	- 수입신고시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로 수입통관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화물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
	- 신고인이 관세등의 추후납부를 신청한 경우
	- 감면세 대상물품으로서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
	-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화물
	- 수입신고수리되지 않은 화물을 세관감독 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
	- 위법 혐의가 있는
담보기한	• 수입화물의 담보기한은 통상 2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, 특수한 상황의 경우 담보기한내에 관할세관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함. 임시 수입화물의 담보기한은 수입일로부터 6개월

3. 물품 검사

3-1. 물품 검사

개요	관할세관 내 감관통관처(監管通關處)에서는 검사가 생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검사는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관리 및 감독구역 내에서 실시
검사 방법	• 전수검사(Thorough Inspection) -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입물품이나 세관이 수입물품 전량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화물의 경우 수작업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검사

	• 표본추출검사(Sampling inspection) - 세관이 임의로 추출한 샘플 화물을 개봉하여 검사함으로써 전수검사를 갈음하는 방법
	• 외장검사(Packing inspection) - 화물의 겉포장의 개폐여부, 파손흔적 및 수량 등을 화물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검사
검사 장소	- 검사는 세관의 관리구역 내 항구, 공항, 기차역 또는 세관감독 장소에서 진행됨.
	- 원유, 곡물, 철강재 등 산적화물이나 화학품 등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재된 운송수단 내에서 검사 진행
	- 화물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에 신청하여 세관관리 및 감독구역외에 세관검사직원이 파견되어 검사 진행
검사 비용	- 세관 관리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자가 검사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나, 검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물의 개봉, 재포장, 이동 비용은 수입자 부담
	- 세관 관리구역 외에서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

4.관세납부 및 통관완료

4-1. 관세 납부

납부 기한	관세는 세관이 서류 심사 후 납부고지서를 수입 신고인에게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(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제외)에 납부하여야 함
납부 절차	- 현장 납부: 납세의무자가 세관에서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를 세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제시하고, 관세납부용 특별 계좌에 관세 납부
	- 전자 납부: e-payment system으로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은행의 계좌에 관세 납부 ※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: http://www.easipay.net/ 참고
	- 관할지 세관의 승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기 용이한 은행을 지정할 수 있음

4-2 통관 완료

개요	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, 관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납부되면
	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

진선영관세사무소는 **중국**수출입통관 및 FTA컨설팅 전문 회사로 통관관련 컨설팅 업무는 물론 보세창고, 화물운송까지 물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